광주진흥중학교 공고 제2025 - 2호

「광주진흥중학교 학교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학교 구성원(학생, 학부모, 교사)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12월 12일

광주진흥중학교장

「광주진흥중학교 학교규칙」 일부개정 예고

1. 개정 이유

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(약칭: 교원지위법)[법률 제19735호, 2023. 9. 27. 일부개정]이 2024. 3. 28.자로 시행되었고, 부칙 제4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구성·운영하였던 '학교교권보호위원회'는 폐지하고 '지역교권보호위원회'로 모든 권한과 절차가 이관됨에 따라, 이와 관련된 「광주진흥중학교 학교규칙」을 재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'제17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'와 그 세부 조항인 '제55조(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·운영)' 및 항목을 삭제하고자 함.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교 구성원(학생, 학부모, 교사)은 2025년 12월 19일(금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진흥중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인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의견서 보내실 곳

- 우편 :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 307(우편번호 62251)
- FAX : 062-956-4936
- 이메일 : 1009hana@naver.com
- 우편, FAX,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

4. 그 밖의 사항

학교규칙 개정(안)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진흥중학교 교무기획부(전화: 062-960-224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광주진흥중학교 학교규칙 일부개정(안)

「광주진흥중학교 학교규칙」(학칙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제17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와 그 세부 조항인 '제55조(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·운영)' 및 항목을 삭제한다.

제17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

제55조(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·운영) 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·운영한다.

1.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
2.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
3.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
4.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

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(교육활동 침해 판단기준 등)은 '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'으로 정한다.

- 이하 장·조의 번호를 순서에 따라 변경한다.
- '제18장' ~ '제19장'을 '제17장' ~ '제18장'으로 변경한다.
- '제56조' ~ '제57조'를 '제55조' ~ '제56조'로 변경한다. 끝.